



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과 (주)LF 업무협약서(MOU)



양 기관의 창업지원부문과 상호 간의 실질적인 협력 구축을 통해 기술교류 및 관련 업무협조를 위하여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과 (주)LF는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장점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약 당사자로서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 분야)

양 기관은 공동발전을 위해 창업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의 분야별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.

- 다음 -

프로그램명	추진일정	협력내용
소비자 반응조사 (DU-CR)	2020. 07 ~2020. 09	-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소비자 반응조사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 - 본 프로그램에 선정된 업체의 수요에 따라 최대 10회까지 참여
디자인 및 홍보 지원 (DU-DP)	2020. 09 ~ 2020. 12	- 초기창업기업의 디자인 및 홍보 지원에 대한 기획 및 전문인력 지원 - 본 프로그램에 선정된 업체의 소유에 따라 최대 6회까지 참여
인플루언서 마케팅 (DU-IM)	2020. 10 ~2020. 12	- 초기창업기업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 및 판로연계 - 본 프로그램에 선정된 업체의 소유에 따라 최대 5회(회당 미팅 2번)까지 참여

제3조 (상호 역할)

- (1) 양 기관은 협업 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지속적 협력을 강화한다.
- (2) 기타 본 협약서에서 정해지지 않은 세부 및 추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.

제4조 (신의성실 의무)

양 기관은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본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본 협약서 상의 조건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본 프로젝트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 (기타 사항)

- (1)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.
- (2)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하에 보충 및 추가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.

제6조 (계약의 효력)

- (1)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날인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(2) 본 협약서는 2부로 작성되며, 협약체결 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1월 31일

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

(주)LF

단장 권순재

BPU팀장 장희용



장희용 332
